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-170호

우리부 「양식어업지원(용자)」 사업 집행지침에 따른 배합사료시설운영자금
용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코자 하오니, 동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
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2024년 01월 25일

해양수산부장관

양식어업지원 [용자]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
1. 추진배경

-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 및 판매가격 안정화를 통한 양식경영 안정화
- 국제 어분 및 곡물가격 급등,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
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어용 배합사료시설 운영비 용자 지원

2. 사업내용

- 사업예산 : 2,240백만원(수산발전기금, 양식어업지원 용자사업)
- 지원내용 : 사료원료구입 등 운영비 지원
- 지원대상 : 양어용 배합사료공장
- 지원형태 : 용자 70%, 자부담 30%
- 지원조건 : 고정금리 연 3.0%(또는 변동금리), 2년거치 일시상환
- 사업수행 : 해양수산부(용자 : 수협중앙회, 수협은행)

3. 추진일정

- 사업자 선정모집 공고 : 2024. 1. 29.(월) ~ 2024. 2. 23.(금)
- 사업자 선정평가 심의 : 2024. 2. 28.(수)

* 정량실적 및 가·감점 평가 : 신청자가 사업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(국립수산
과학원, 시·도, 한국양어사료협회 등 협조 요청)

4. 참여대상 및 방법

- 지원대상 : 「사료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중 양어용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업체
 - * 단미·보조사료 제조업, 남은음식물사료제조, 미등록자는 제외
- 신청기간 : 2024. 1. 29.(월) ~ 2024. 2. 23.(금)
- 신청방법 : 우편 또는 방문(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) 제출
 - * 우편주소 : (우)30110,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청사 해양수산부 5동, 양식산업과 양식어업지원 사업담당자('24.2.23. 18: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)
- 제출서류 : ①지원신청서(별지 1서식) ②사업계획서(별지2서식) ③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(별지 3서식) ④ 증빙자료 등
- 선정기준(사업자 선정 평가표, 별첨 참조)
 - 배합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업 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선정을 위해 정량평가(60%, 기존 사업운영실태) 및 정성평가(40%, 사업발전성) 실시
 - 평가결과 종합점수 60점 이하는 부적격으로 미선정
- 융자금 배정
 - 사업자 선정 평가 시 사업자 융자희망액 및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사업자별 융자금 배정
 - * 사업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1개소일 경우, 평가결과에 따라 융자희망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음
- 사업자 명단통보 : 2024. 3. 4.(월) ~
- 사업자 대출실행 기간 : 2024. 3. 4.(월) ~ 2023. 6. 30.(목)
 - * 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대출 미실행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5. 사업 공고

- 해양수산부 홈페이지(www.mof.go.kr) 「소식바다-공지사항」 참고

6. 문의처

- Tel : 044-200-5631 ~ 2(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김우진 사무관, 이수진 주무관)

양식어업지원(융자) 사업계획서

1. 사업목적

○

2. 2024년도 사업계획

○

- * 경영개선 및 사료가격 안정화, 배합사료 원료(단미사료 등) 수급, 친환경 배합사료 생산, R&D투자, 연구인력구성 등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

3. 자산 및 부채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자 산			부 채			
항 목	금 액	비 고	대출기관	금 액	상환기일	비 고

4. 융자금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자금명	합 계	1/4	2/4	3/4	4/4
양식어업지원 (융자)					

- * 대출 실행기간 동안 융자금 지출계획을 작성하며 필요시 칸 추가

5. 융자금의 사용용도 및 산출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사용용도	금 액	산출내역	비 고
계			

- * 원료명, 원료구입 예정국가, 구입예정량 등 구체적으로 작성

6. '23년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현황

구 분	내 용
연간 배합사료 생산량(톤)	○ 총 생산량 : 000톤 ○ 품목별 연간생산량 - 넙치용 : - 우럭용 : - ...
방역소독장비	○ 공장출입구 소독설비 : 0대 ○ 고압세척기 : 0대 ○ 개인소독시설 : 0대
자기품질검사(회)	○ 사료중 유해물질 : 0회 ○ 배합기의 배합정밀도 : 0회 ○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: 0회 ○ 배합사료의 등록성분중 칼슘, 인, 조단백질, 조지방, 조섬유, 조회분, ADF, NDF, 수분 : 0회 ○ 용기·포장검사 : 0회 ○ 기타 실적 : 0회(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검사)
사료가격(원/kg)	○ '22년 : 평균 000원 * 품목별로 기재 ○ '23년 : 평균 000원 * 품목별로 기재
전문가 보유현황	○ 석사급 : 0명 ○ 박사급 : 0명
생산기기 보유	○ EP생산기기 : 0대 ○ SEP 생산기기 : 0대

* 각 항목별 증빙자료도 반드시 제출하며, 시설의 경우 사진자료 첨부

7. 기금지원 기대효과

품목명	생산량 또는 거래실적	생산효과 또는 경영개선효과	비 고

*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가능

8. 기타사항

- 2023년 정부정책(사료분야) 회의·교육 참석실적(건)
- 2023년 양식어업인 자체 교육운영 실적(건)

* 각 항목별 증빙자료도 반드시 제출해야하며, 양식산업과에서 검토 후 가점 부여

양식어업지원(융자)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

(년 월 일 기준)

1. 신청자 인적사항

사업체명 (대표자명)	사업자등록번호 (생년월일)	주 소 소재

2. 종합거래 신용상태

과거 1년간 연체사실			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		신용관리대상자 등록	
유	무	연체금액	유	무	유	무

3. 소요금액

사 업 명	총사업비(㉠+㉡)	㉠융자(70%)	㉡자담(30%)

4. 융자가능액(㉠+㉡+㉢) : 천원

㉠ 동산 · 부동산

담 보 종 류	감정가액①	담보인정비율②	선순위 설정금액③	융자가능금액 (①*②-③)

* 담보대출의 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“대출신청자료”에 의함
 * 감정가액은 탁상감정으로 평가

㉠ 보증서

담 보 종 류	보증한도	한도산정	비 고
간이신용	5천만원 이내		
일반신용	3억원 이내		
정식신용	3억원 초과시		

* 농신보 보증센터 보증서로 갈음 가능

㉡ 기타담보

담 보 종 류	담 보 가 액	대출가능금액	비 고

*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정부지침 또는 수협 내부규정에 의한 정식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대출적격 여부 심사에 의해 대출가부를 최종 결정

년 월 일

()수산업협동조합장 (인)

()지역금융본부장 (인)

사업자 선정 세부평가표

□ 업체명 :

□ 평가항목 및 배점

구 분		세 부 항 목	배점	제출자
정성 (40%)	사업 발전 노력	① 경영개선 및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	40	신청자
		②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노력 - 원료수급, R&D투자, 연구인력구성 등	30	"
		③ 친환경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노력 - 저어분 사료, 어분대체 원료 사용 배합사료 생산 등	10	"
		④ 용자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- 정량적, 정성적 효과 기재	20	"
		⑤ 소계(가중치 40% 적용)	100	
정량 (60%)	사료 생산실적	① '23년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 실적 - (20×사료생산실적(톤))/10,000(톤)	20	신청자, 한국사료협회
	방역 소독 관리	② 공장출입차량 및 방문자 방역소독 - 공장출입구 소독설비, 고압세척기, 개인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: (10) - 상기 시설 중 2 종류만 설치 및 운영 : (7) - 상기 시설 중 1 종류만 설치 및 운영 : (3)	10	신청자
	원료 및 제품관리	③ 품질 및 안전성 관리 - 자기품질검사를 규정에서 정한 의무보다 많이 이행한 경우 점수 부여(1회당 5점)	20	신청자
	생산성 향상	④ 전년도 사료가격 인상율 - (1- 전년대비 사료가격 인상율) × 30 * 생산품목이 많은 경우, 판매량이 높은 상위 3개 내외 품목에 한해서 평가 가능	30	신청자, 한국사료협회
		⑤ 사료제조 기술 보유 능력 - 전문가 근무 유무 : 석사급 1명당 2점, 박사급 1명당 5점 - EP, SEP 기기 보유 능력 : 1대당 4점	20	신청자
	⑥ 소계(가중치 60% 적용)	100		
가감점	감점	① 사료검사 위반사항 : 연간('23) 1회 적발당 -5점	-10	수과원
	가점	② 정부정책(사료분야) 회의·교육 참석 - 연간('23) 1회 참석당 +1점	+5	신청자, 해수부(수과원)
		③ 양식어업인 교육운영 횟수 - 연간('23) 1회 개최당 +1점	+5	신청자

* 동 사항에 대한 모든 실적 및 증빙서류는 '양어용 배합사료'에 한함

* 정량 및 가감점 평가는 양식산업과에서 평가(신청자 제출서류), 종합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으로 미선정